

부산지방법원 2024. 7. 24 선고 2023나5802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# 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4. 7. 24 선고 2023나58022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3. 7. 11 선고 2022가단348635 판결

### 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하

피고, 항소인 1. B

2. 주식회사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 2024. 6. 26.

판결 선고 2024. 7. 24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. 7. 11. 선고 2022가단348635 판결

### 주문

1.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주식회사 G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. 12. 6.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D은 주식회사 G에게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. 12. 6. 접수 K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
다. 주식회사 G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. 12. 8.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라. 피고 D은 주식회사 G에게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. 12. 9. 접수 AO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
2. 피고 B, 주식회사 C, E,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, 주식회사 C, E, F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B, 주식회사 C, E, F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[청구취지]

1.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G와 피고 B 사이에 2021. 12. 6.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B은 원고에게 10,8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G와 피고 B 사이에 2021. 12. 6.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B은 주식회사 G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2021. 12. 6. 접수 H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
3.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G와 피고 B 사이에 2021. 12. 6.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B은 주식회사 G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2021. 12. 6. 접수 I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
4.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G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2. 9. 28.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한다, 피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G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2022. 9. 28. 접수 J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  5.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G과 피고 D 사이에 2021. 12. 6.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D은 주식회사 G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2021. 12. 6. 접수 K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  6.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G과 피고 D 사이에 2021. 12. 8.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D은 주식회사 G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2021. 12. 9. 접수 AO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).
  7.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G과 피고 E 사이에 2021. 10. 26.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E은 주식회사 G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2021. 10. 26. 접수 L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  8.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G과 피고 F 사이에 2021. 9. 16.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F은 원고에게 21,9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[항소취지]
-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등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

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행의 "15의"를 "15, 22 내지 24, 28, 32, 38, 41, 45의"로 바꿔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의 "AP에게"를 "G에게"로 바꿔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꿔 쓴다.

『1)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물반환으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, 위 각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불만한 사정이 없으므로(피고 D이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자동차를 양수하면서 위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,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채무자 변경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후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여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),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2, 3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, 피고 C는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, 피고 D은 별지 목록 순번 5, 6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, 피고 D, 피고 E은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각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를 삭제하고, 제14행의 "4)"를 "3)"으로 바꿔 쓴다.

## 2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피고 B, 주식회사 C, E,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B, 주식회사 C, E,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,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**재판장판사이효신**

**판사이준민**

**판사이미경**

**별지**